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6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1월 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폭 넓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중복지원 금지 부칙을 삭제함(안 부칙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8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2007.04.10. 제정)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